

[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]
검 토 보 고 서



[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경숙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성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,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
-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(안 제7조)
- 인공지능산업위원회 설치 등 (안 제8조)
- 인공지능센터의 설치 (안 제11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가. 발의배경

- 인공지능(AI)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써,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하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. 특히 제조업, 의료, 교육,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, 인공지능산업은 기존 산업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-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I 기업 유치, 연구개발 지원,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
- 충청북도 또한 스마트 제조·바이오 헬스,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과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(AI)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, 지역 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됨
- 이에 따라 향후 충청북도가 인공지능 활용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산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나. 조례안의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

- 안 제5조는 인공지능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사항이라 할 수 있음
- 안 제7조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됨
- 안 제8조는 인공지능산업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,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위원회의 심의·자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,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절한 방안이라 판단됨
- 안 제11조는 인공지능산업 분야 활용 및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,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 명시하여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14조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·학·연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소통 가능한 창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판단됨

다. 상위법령 등 검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“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”고 되어있고, 동조 제2항에 따르면 “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”고 명시하며, 동항 3호 차목과 타목에 따르면“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”, “중소기업의 육성”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음
- 이에 상위법령에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라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본 조례안은 급성장하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, 센터의 설치, 위원회 구성,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을 포함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
- (타당성) 본 조례에서는 내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에 맞게 용어정의 및 체계를 구축하고 중복의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○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
○ (종합의견) 해당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되며,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

향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토대로, 내년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올해 공포 예정인 해당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새로운 위임조문을 본 조례안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